

내부고발자 및 피신고자 보호

이 절차는 내부고발사항에 대한 비밀유지를 공고히 하고, 내부고발자와 피신고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된다.

선익의 내부고발자는 후에 밝혀질 고발내용의 진위여부와 무관하게 어떠한 보복과 질책, 외부압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복이 발생한 경우, 책임자에 대한 징계 조치가 취해진다.

반면, 피신고자의 명예훼손을 목적으로 허위의 내부고발을 한 경우에도, 신고자는 법규에 따라 징계 또는 고발 대상이 될 수 있다.

내부고발자나 피신고자의 개인정보는 공개 제한 되고, 지정 연락처(보고 대상) 및 법 절차상 요구되는 경우 회사는 정보를 제공 할 수 있다.

비밀유지를 위해 신고자(내부고발자) 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 내부고발시스템을 이용하여 Alert(보고서)제출,
- ▶ 기재 내용에 대한 주의 유지,
- ▶ Alert 을 제출한다는 사실을 명시할 것.

ALERT LINE(보고라인) – 국제 수신자 부담 전화번호

그리스	00800 441 31422	에이레 (아일랜드)	1800 567 014
남아프리카 공화국	0800 990520	영국	0800 374199
네덜란드	0800 022 9026	오스트리아	0800 281700
노르웨이	800 14870	이스라엘	1809446487
뉴질랜드	0800 443 816	이집트	0800 00 00 23
대한민국	00308 442 0074	이탈리아	800 783776
덴마크	8088 4368	인도	000 800 440 1286
독일	0800 182 3246	인도네시아	001803 04411201
라트비아	8000 26 70	일본	00531 78 0023
러시아	810 800 2058 2044	중국 Telecom (남부)	10800 441 0078
루마니아	08008 94440	중국 Netcom (북부)	00800 3838 3000
룩셈부르크	8002 4450	체코	800 142 428
리투아니아	8800 30 444	칠레	123 002 004 12
말레이시아	1800 807055	캐나다	1888 268 5816
멕시코	01800 123 0193	컬럼비아	01800-944 4796
몰타	800 62404	코스타리카	8000440101
미국	1877 533 5310	쿠바	2935
바레인	80004475	크로아티아	0 800 222 845
방글라데시	157001	키프로스	800 95207
베네수엘라	0800 100 3199	타이완	0080 10 44202
베트남	120 11527	태국	001 800 442 078
벨기에	0800 71025	터키	80044632066
불가리아	00800 110 44 74	파키스탄	00800900 44181
브라질	0800 891 8807	페루	80053611
사우디 아라비아	800 844 0172	포르투갈	800 880 374
스리랑카	011 244 5413 (콜롬보에서 발신 시 11 제외)	폴란드	00800 441 2392
스웨덴	0200 285415	푸에르토리코	1866 293 1804
스위스	0800 563823	프랑스	0800 900240
스페인	900 944401	핀란드	0800 116773
슬로바키아	0800 004461	필리핀	1800 1442 0076
슬로베니아	0800 80886	하와이	1866 293 2604
싱가포르	800 4411 140	헝가리	06800 14863
아랍에미리트	8000 44 138 73	호주	1800 121 889
아르헨티나	0800 6662603	홍콩	800 930770
아이슬란드	800 82 79		
에스토니아	800 00 44 265		



내부고발절차



법규, 윤리규정, 사규에 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회사는 기존에 수립한 내부고발절차에 추가하여 회사는 다음과 같은 신규 **내부고발시스템**을 구축함:

- ▶ Alert Line (보고라인),
- ▶ 회사 내부고발 지정 연락처,
- ▶ 직, 간접적 담당 매니저

위 시스템은 내부고발자가 공개가 제한되는 Alert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구축되었다.

이 문서는 내부고발시스템을 이용하여 신고접수를 하는 절차를 설명한다.

내부고발자

내부고발자라 함은 내부고발시스템을 사용하여 Valeo 에 Alert(보고서)을 제출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된 사람이다. 이들은 다음과 같다:

- ▶ Valeo 직원,
- ▶ 계약직,
- ▶ 임시노동자,
- ▶ 법적으로 허용된 제 3 자.

The Alert (보고서)

Alert 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고서 이다:

- ▶ 의심이 되거나 입증된 부정부패 행위, 독직, 그리고 Valeo 반 부패 정책 및 프로그램의 위반,
- ▶ 부정부패 및 독직 행위,
- ▶ 의심이 되거나 입증된 행위는 다음의 경우에 해당한다:
 - 범죄 및 위반 행위,
 - 프랑스에서 승인된 국제협정 및 이 협정에 근거한 국제기구의 독립적인 결정사항, 법규 및 규정의 심각하고 명확한 위반 행위,
 - 사회의 이익에 위협 또는 피해를 끼치는 행위,

- 반경쟁적 행위. (i.e. 담합)
- ▶ 인권 및 기본적인 자유의지를 침해하려는 심각한 위협 또는 행위, 그리고 개인 또는 주변 환경의 건강 및 안전을 손상시키는 행위.

내부고발시스템

법률 또한 Valeo 의 절차 및 방침에 어긋나는 행위를 신고하는 방법으로 공개가 제한되는 Alert 을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 ▶ **Alert Line (보고라인)**은 Valeo 가 서비스 제공자를 통해 만든 시스템이며 Alert 와 증빙서류들을 다음과 같이 제출할 수 있다:
 - **구두 제출:** 수신자 부담 전화번호를 이용하면 선택한 언어를 구사하는 교환원과 연결되며, 해당 국제 번호리스트는 이 문서의 하기에 표시되어 있다. 또한 기본 요금으로 어느 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번호는 다음과 같다:
 - **+44 1249 661 808**
 - **서면 제출:** 선호하는 언어로 제공되는 무료 웹사이트에서 설문지를 작성하여 상세한 Alert 를 작성할 수 있다. 또한 증빙서류들을 하기 포탈을 통해 업로드 할 수 있다:
 - www.expolink.co.uk/valeo.
 - **E-mail 제출:** valeo@expolink.co.uk.
- ▶ **지정 연락처**는 그룹에서 임명되었으며 직접 또는 Alert Line 또는 매니저를 통해서 제출된 Alert 을 수령 및 분석하고 처리한다. 두 명의 지정 연락처는 다음과 같다:
 - ▶ 그룹 윤리 & 규정준수 최고 책임자
 - ▶ 그룹 내부감사 & 내부통제 이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연락을 할 수 있다:
 - **전화번호: +33 1 40 55 20 20,**

- **우편 주소:** 43 Rue Bayen 75017 Paris
- ▶ 또한, 믿을 수 있는 **직, 간접적 담당 매니저**에게 직접 보고 할 수 있다.

Alert 제출시

Alert 을 제출시 방법에 상관없이 아래 내용 준수하여야 한다:

- Valeo 의 직원, 계약직 또는 임시노동자임을 명시할 것,
- 특히 구두 및 서면과 같이 직접적으로 고발 시 현 절차에 따라 **Alert 을 제출한다고 명시할 것,**
- Alert 로 신고하게 된 관련사실들을 정확하고 객관적이며 사실적이고 타당성 있게 기술할 것,
- 증빙서류들을 E-mail 로 제출하고, 만약 익명 제출을 원할 시 Alert Line 을 통하여 웹사이트에 업로드 할 수 있다. 보고된 증빙서류들은 공개 제한 된다.

만약 궁금한 점이나 조언이 필요할 시에는 해당 준법 책임자, 법무팀, 또는 윤리규정 책임자에게 연락한다.

주의 – 몇몇 법적 체제에선 내부고발자들이 자신의 신원을 밝히는 것이 추천됨.